

[별첨3]

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

한국산업기술시험원

【한국산업기술시험원 「인사규정」 제7조(채용결격사유)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로 면직(해임)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
9.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
12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※ 상기 조항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가 상충될 경우, 「국가공무원법」 우선 적용

【한국산업기술시험원 「채용세칙」 제14조(채용취소)】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
2. 「인사규정」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
3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4.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
5. 기타 채용관련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